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 조정 등 》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1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3
------------------	---

【참고자료】

1.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개요	13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 개요	14

I. 개요

1. 제안경위(의안번호 제2218315호)

가.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14.

다. 회 부 일 : 2026. 4.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시의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맞추어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향상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2. 검토 사항

1)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 조정(안 제9조제1항)

□ 현재 대상별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 전단은 질병관리청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같은 항 후단은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질병관리청은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 전단을 근거로 일반 국민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5세(어린이집, 유치원) 7,746명, 12세(중학교) 12,309명, 총 20,055명
* 어린이집 97.6%(164/168개), 유치원 100%(123/123개), 중학교 99.2%(252/254개)
- 조사방법: 조사수행팀(치과의사, 보조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설문조사
- 조사내용

검진 (5세, 12세)	(5세) 치아상태(치아우식증 등), 치료필요
	(12세) 치아상태(치아우식증, 치아외상 등), 치료필요 등
설문조사 (12세)	치과의료이용, 구강관리행태(칫솔질, 구강관리용품사용), 치통 경험률 등

자료 : “2024년,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현황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5. 7. 1.

- 또한 질병관리청은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 후단을 근거로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 구강 행태 및 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연령, 장애유형(중분류)* 고려 약 2천명
* 외부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 **조사방법:** 전문조사수행팀**이 가구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설문조사
** 조사 대상을 고려하여 1팀당 3명이상(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보조원), 총4팀
- **조사내용:** 78개 항목, 50개 지표

검진	치아 및 잇몸 상태(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보철 및 외상치아 등
설문조사	치과의료이용, 구강관리행태(칫솔질, 구강위생용품 사용), 치통 경험률,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자료 : 질병관리청

- 따라서 현재 질병관리청이 「구강보건법」 제9조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는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와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로 구분됨.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¹⁾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²⁾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9조(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는 매년 실시한다.

- 질병관리청은 이를 근거로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는바, 동 조사의 검진 조사 항목에는 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사가 포함되어 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구강검사 개요 >

○ 조사대상: 1세 이상 약 1만명	
○ 조사방법: 공중보건치과위가 이동검진차량내에서 구강검진 및 설문조사	
○ 검진 항목	
검진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보철물 상태, 치아홈메우기, 자연치아 수 등
설문조사	치솔질 여부/시기, 구강검진, 치과이용/진료항목, 미충족의료/이유, 저작불편 등

자료 : 질병관리청

- 대상별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이와 같이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1998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도입되면서 2007년에 구강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구강보건법」 제정 이후 동법에 근거하여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가 분리·실시된 데서 기인함.
-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 후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수준이 구조적으로 상이하고, 의료접근성이나 자기관리능력 측면

에서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장애인 구강건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구강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현행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가 10년 단위(2005년, 2015년, 2025년)로 실시되어 옴.

○ 이에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3년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동 조사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시 주기 단축을 통해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구강건강 격차를 동일 시점에서 비교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강보건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대상은 그 문언과는 달리 현재 일반 국민이 아닌 ‘아동’으로 한정되어 3년마다 실시되고 있고, 그 밖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면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실태조사와 함께 3년마다 실시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통계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³⁾에 따라 기존 국가승인통계인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의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통계 명칭을 ‘아동 및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로 변경하였음.
- 다만, 아동 및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함께 조사 할 경우 한정된 자원으로 조사수행, 질관리, 통계의 정확성 확보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각각 3년 주기로 조사하는 내용⁴⁾으로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작성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2025년 이후부터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임.⁵⁾

3)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4)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3년주기로 2024년, 2027년, 2030년 등 순으로 조사하고,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25년, 2028년, 2031년 등 순으로 조사하여 각각 그 결과를 공표
- 5) 다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기존 3년 주기로 실시되어 온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가 2024년에 실시되었고,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25년에 실시된바, 국가승인통계 명칭이 ‘아동 및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로 변경되더라도 두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2) 독거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 증진 노력 의무(안 제15조제3항)

□ 독거 장애인은 보호자 부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 경제적 취약성, 이동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강질환 악화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독거 장애인은 보호자 동거 장애인이나 시설거주 장애인에 비해서도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할 것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독거 장애인을 독거 노인과 동일하게 구강건강 고위험군으로 규정하게 되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②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구강보건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③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복지·보건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 등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먼저, 보건복지부는 ①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⁶⁾ 설치비 및 운영비와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지원하고 있고, ②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⁷⁾을 통해 장애인(중증+뇌병변·정신 경증 장애인)이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고 있으며, ③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⁸⁾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구강문제가 있는 어르신(독거노인 포함)의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맞춤형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대상자 발굴 등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추진·시행하고 있는바,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교육, 불소도포 및 노인·성인 스케일링, 순회구강건강관리 등이 있음.

6) 중앙 및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총 18개소 운영 중('26년 4월 기준)

7)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주요내용) 장애인(중증+뇌병변·정신 경증 장애인)이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주기적인 구강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지역·기간) 부산·대구·남구 · 제주 제주시('20.6~'24.2), 전국('24.2.~)
(대상기관)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서비스)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자료: 보건복지부

8) '25년 29개 보건소 → '26년 106개 보건소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및 노인 구강보건사업 예시 >

사업	내 용
학교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	○ 학생 대상 칫솔질,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질환 예방 진료 수행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교육	○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교육 실시
불소도포 및 노인·성인 스케일링	○ 대상자의 구강건강 상태 및 전신 상태 등에 따라 치주 처지(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세정술) 및 불소도포 시행
순회구강건강관리	○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 장기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3)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는 시의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 통계 확보 및 구강관리가 취약한 홀로 사는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강보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강건강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 질병관리청은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안정적인 조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한정된 자원으로 조사수행, 질관리, 통계의 정확성 확보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함께’라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의 정례화와 홀로 사는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강화는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실태조

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예산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고 조사 결과가 치과 진료비 지원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후 관리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현행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시행 주기는 부적절하나,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5년 주기 조사가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1

□ 추진배경

- 구강건강은 각종 전신질환과도 연관되나, 고령층일수록 경제적 이유, 낮은 이용 접근성 등으로 미충족 치과의료율이 높은 상황
 - 취약계층, 특히 거동 불편한 재가 노인일수록 이동성이 낮아 구강 관리에 취약하므로 방문을 통한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개요

- **(목표)** 방문시 활용할 수 있는 구강상태 평가·군분류·맞춤형중재 표준가이드 제공 및 컨설팅 등 시범운영, 노인 의료-돌봄통합 지원 사업 등 연계('25년) →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26년~)
- **(내용)** 보건소 구강보건 전문인력이 치과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 보건소 내외 타 보건의료사업 등에서 연계·의뢰된 구강건강문제가 있는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 **(주기·내용)** 군 분류 기준에 따라 맞춤형 중재 서비스 제공(① 구강노쇠, 구강건조 등 구강교육 및 상담, ② 불소도포, 기타 구강관리 등 예방적 처치)
 - * (관리군) 3개월 집중 관리(방문 3회, 유선 모니터링 2회)
 - * (일반군) 12개월 기준 연 1회(방문 1회, 구강건강관리 교육 제공)
 - **(절차)** 구강건강문제 파악, 구강관리계획 수립 및 중재서비스 제공



자료 : 보건복지부

[참고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치과병원·종합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 감면지원
- **(지원)** 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센터 이용 장애인 비급여 본인 부담비 일부 지원* 등(중앙센터 국비 100%, 권역센터 국비 50%·지방비 50%)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30%), 치과영역 경증장애인(10%)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등급
뇌병변	중증 및 경증	뇌전증	중증 및 경증
지체	중증	지적	중증
정신	중증	자폐성	중증

- **(대상)** 장애인 (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현황)** '09년부터 센터를 설치해 오고 있으며, '26년 4월 현재 중앙센터 1개소('19.8월 개소, 서울대치과병원), 권역센터 17개소 운영 중
- **(계획)** 미설치 1개 권역(전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예정('26.5.30)

□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별 설치현황**



No	구분	지역	센터 지정 병원	개소시기
1	중앙	중앙	서울대치과병원	'19.08
2	권역	충남	단국대 천안치과병원	'10.12
3		광주	전남대치과병원	'11.05
4		부산	부산대병원	'12.04
5		경기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12.05
6		전북	전북대치과병원	'13.04
7		대구	경북대치과병원	'15.07
8		강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5.12
9		인천	가천대길병원	'16.02
10		제주	제주대병원	'17.12
11		대전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20.07
12		충북	청주한국병원	'20.12
13		경남	부산대치과병원	'21.08
14		울산	울산대병원	'21.08
15		경기북부	명지병원	'22.12
16		세종	단국대 세종치과병원	'24.08
17		서울	연세대 치과병원	'25.03
18		경북	안동병원	'26.03

자료: 보건복지부